

브라질 전기전자제품 안전규제 현황



홍재희 선임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브라질은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전기안전 및 에너지효율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규제기관은 INMETRO(National Institute of Metrology, Quality and Technology)이다. INMETRO는 제품 안전 및 에너지효율의 규제기관이면서 인증기관 및 시험소 지정기관이기도 하다.

브라질에는 현재 제품군별로 개별 ordinance(규정)가 존재하며 인증획득을 위한 상세요건 및 유지규정 등에 대해서는 ordinance별 RAC(적합성평가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INMETRO 사이트를 통해 확인가능).

한 개의 ordinance에 해당되는 제품은 다른 ordinance에는 포함이 되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상업용이든 가정용이든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는 제품은 모두 다양한 ordinance에 의해 강제 규제되고 있다.

브라질의 인증제도는 크게 제3자 인증제도와 자기적합선언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제품에 따라 인증제도가 다르게 적용되나 일반적으로 위험도가 적은 제품이 자기적합선언제도에 적용되고 있다.

제3자 인증제도의 경우, 크게 세 가지 요건이 적용되는데, 한 가지는 제품시험이며, 다른 하나는 공장심사, 마지막은 CCS(Customer Complaint Service)확인이다. 인증서는 반드시 INMETRO에서 지정된 인증기관(OCP)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INMETRO 지정 시험소 또는 해외시험소의 경우 INMETRO와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된 기관(ILAC, IAAC)에 따라 지정된 제3자 시험소에서 시험이 가능하다.

자기적합선언 제도의 경우, 반드시 브라질 현지의 INMETRO에 의해 지정된 시험소에서 시험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가정용전기전자 제품은 제3자 인증제도로 ordinance 371에 의해 규제되며, 가정용 전기전자 제품 중 블렌더, 드라이기, 진공청소기의 경우, 소음시험을 통한 소음라벨표시가 추가 강제 적용된다. IT제품은 정부조달의 경우에만 제3자 인증제도인 Ordinance 170에 의해 규제되고 있고 이 중, 휴대용 컴퓨터와 데스크톱 컴퓨터는 에너지효율라벨이 강제 적용된다. A/V 제품은 현재 규제하는 제도가 없으나, 2015년 TV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 규제될 예정이다.

대상품목

가정용전기전자제품, 정보사무기기(정부조달제품), 가스기기, 스위치, 플러그, 콘센트, 전선류가 주요 강제대상품목이며, INMETRO에서 법으로 규제하는 INMETRO 인증강제대상 품목은 하기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http://www.inmetro.gov.br/qualidade/prodCompulsorios.asp>

인증기관

INMETRO가 규제하는 제품의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은 INMETRO가 지정하고 있으며, NCC, ICB, TUV, UL 등의 기관들이 지정되어 있고, 지정된 기관 리스트는 INMETRO 사이트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전기전자 제품 안전인증기관은 OCP로 지정되면 각 기관별로 고유 OCP번호를 가지게 되며 인증서가 발급된 제품에는 인증기관 고유 마크와 OCP번호가 INMETRO 마크와 함께 표시되어야 한다.

인증절차 및 요건

브라질 인증은 반드시 브라질 현지에서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브라질 법인(대리인)이 신청자하여 인증권을 가지며, 제품의 매뉴얼 및 라벨은 반드시 포르투갈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신청자는 지정된 OCP 인증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하기 세가지를 만족하여야만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 INMETRO로부터 지정된 시험소 또는 IAAC회원기관 또는 ILAC회원기관(한국의 경우 KOLAS)으로부터 지정받은 시험소에서 제품시험
- OCP인증기관(또는 협력기관)으로부터 공장심사
- 고객불만서비스시스템(Customer Complaint Serice; CCS) 확인

상기 모든 사항이 만족됨을 인증기관이 확인하면 인증서가 발행된다.

인증을 획득하면 보통(제품마다 다름) 1년을 주기로 제품시험, 공장심사, CCS(고객불만서비스)검사를 재실시하며 문제가 없을 시 인증은 갱신된다.

인증마크

강제인증은 INMETRO 심볼과 함께 인증기관의 마크를 제품본체 및 포장 모두에 표시하는 것이 의무적 이며, 라벨은 프린트되거나 라벨로 부착될 수 있으며, 최소 크기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마킹 표시방법은 Ordinance별로 조금씩 다르다.

※ 가정용전기 INMETRO 인증마크 예제

